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2월 18일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

나. 제안이유

- 구미시 도시계획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 제정한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근거 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으며,
-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존치 이유가 사라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 타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최 명 호

- 본 「구미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근거 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 01. 28. 폐지되었으며, 「도시개발법」에 의거하여 2008. 06. 10.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